

ALL ABOUT PATENT

유·익·한·특·허·상·식

영업비밀의 이해 - II. 영업비밀 침해

이흥재 | 특허청 가공시스템심사과

개요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특허와는 다르게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하우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영업비밀의 기본적 개념들을 근간으로 영업비밀 침해, 즉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영업비밀에 대한 것을 2회에 걸쳐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려고 했으나 요즘 코오롱과 하이닉스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영업비밀이 만약 유출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며 이에 따른 대응절차 및 분쟁 발생 시 구제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연속 2회에 걸쳐 이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영업 비밀의 이해

1.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1.1 영업비밀 침해 형태의 두 가지 유형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는 6가지 유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이 6가지 침해 유형은 부정취득과 관련된 것과 비밀유지 의무자의 부정공개와 관련된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1.9 요약 참조).

1.2 부정취득행위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함.¹⁾ 즉,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과정에 절취, 기망 등의 불법한 행위가 개입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보고 있음.

영업비밀보호법상의 부정취득행위는 정당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입수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취득한 그 정보를 스스로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거나 특정한 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비밀을 전득, 공개하는 행위까지 포함함.

1.2.1 행위 유형

1) 취득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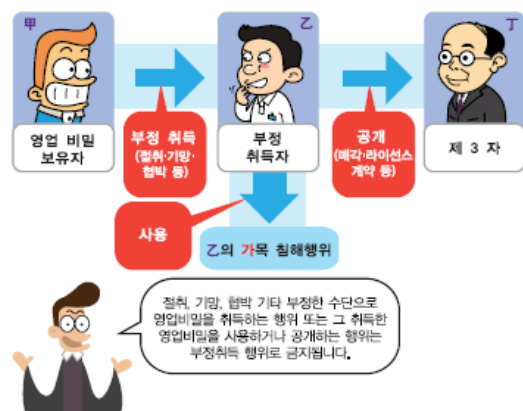
부정취득행위에 있어서, 절취, 기망이나 협박은 부정수단의 예시에 불과하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에도 강도, 폭행, 주거침입, 횡령, 배임, 장물에 관한 죄 등 형법 법규에 해당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이와 동등한 위법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사회질서 위반행위(미인계, 도청, 매수, 위장취업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됨.

2) 취득행위의 유형

- 영업비밀 그 자체인 유체물(비밀의 촉매나 신제품 등)이나 영업비밀이 기재된 유체물(설계도나 고객

¹⁾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부정취득행위



명부 등)을 절취하거나 사기, 협박, 기타의 부정한 수단
에 의해 취득하는 행위.

- 영업비밀의 매체물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영업비밀의 매체물을 보관하고 있는 책상,
금고, 봉투, 플로피 디스크 등을 무단으로 개봉하거나
사용하여 안에 들어있는 영업비밀을 기억하거나 복제하
는 행위.
- 영업비밀을 기억하는 사람으로부터 사기, 협박, 도청 등
의 수단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취득행위의 예

- 경쟁업체의 직원을 스카우트하는 행위: 경쟁업체의 직
원에 대한 스카우트가 단순한 노동력의 확보나 그 직원
의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이용하기 위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볼 수 없지만, 경쟁업체의 영업비
밀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높은 직위나 고액 급여에
의한 매수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한 스카우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며, 전직된 직원 역시 전 회사와의 계약관
계나 부정한 목적의 유무 등에 따라 민, 형사 처벌을 받
을 수 있음.
- 회사의 생산시설에 잠입하여 영업비밀을 탐지한 제3자
의 행위: 전형적인 산업스파이 행위로서 이는 침해행위
에 해당되며, 이와 함께 형법상의 주거침입 내지는 절도
죄 등도 성립할 수 있음.

1.2.2 사용행위

사용행위란 영업비밀을 그 고유의 용도 내지 사용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행위를 말함.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
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
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
으로 특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킴.

1.2.3 공개행위

공개행위란 영업비밀을 불특정인에게 공공연히 알리거나
또는 그 비밀성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매각하거나 알려
주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절취한 대량주문서 등을 산업스
파이에게 인도하는 행위나 절취한 공사견적서 등의 기밀서
류를 경쟁회사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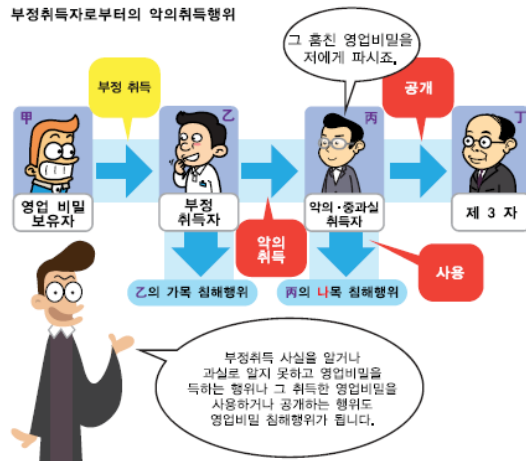
영업비밀을 부정공개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밀, 지식 등을 제3자가 입수하는 것을 금지
하는 데 있으므로 영업비밀 전부는 물론이고 그 일부만을 알
수 있게 한 경우는 부정공개행위에 해당함.

다만, 영업비밀을 공개한 상대방이 이미 그 영업비밀을 알
고 있는 경우에도 부정한 공개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는 의견이 나누어지는데, 판례는 영업비밀에 대해서 상대방
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공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2005
노257 판결).

1.3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
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영
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함. 이는 (가)목의 영업비밀 부정취
득행위 후, 당해 영업비밀의 유통과정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
로 당해 영업비밀을 전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부정취득자로부터 직접 취득한자(전득자)뿐만 아니라 전득
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정취득행위가 개입
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1.3.1 행위 유형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
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됨. 이는 (가)목의 부정취득행위를 전제로 당해 영업비밀의 유통과정에서 부정취득이 개입된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전득하는 경우를 금하고 있는 것으로 (가)목의 부정취득행위를 본범이라면 (나)목은 장물범적 위치에 있다 할 수 있음.

1.3.2 적용 요건

1) 악의 취득자가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수단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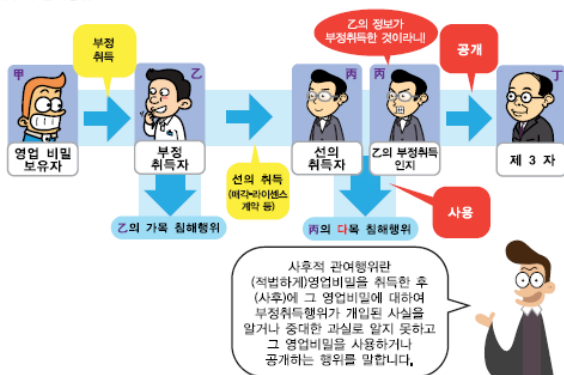
(나)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취득자가 앞선 부정 취득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수단 그 자체는 정당한 것에 한함. 따라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자로부터 다시 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원래의 보유자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인 (가)목 소정의 침해행위가 됨.

2)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것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이란, 영업비밀이 정당한 보유자로부터 자신의 앞선 자에게 이르는 영업비밀의 유통과정 중에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이 개입된 것을 의미함. 따라서 여기서 부정취득은 취득자의 직전 보유자의 부정취득행위는 물론, 그보다 앞선 영업비밀 거래단계의 부정취득까지 모두 포함함.

1.4 부정취득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사후적 관여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됨²⁾.

²⁾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다)목: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4.1 행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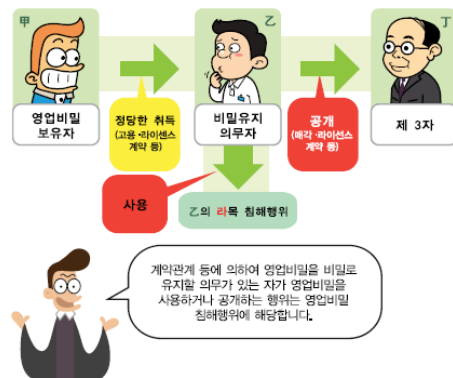
본목의 행위는 (가)목이나 (나)목과 달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후의 행위이므로 당연히 영업비밀의 사용과 공개행위만이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되며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1.4.2 적용 요건

취득 당시에는 부정취득의 개입 여부에 관해 선의, 무중과실이었던 자가 영업비밀의 보유자로부터 경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금지청구의 소장을 송달 받게 되면 사후적 악의자가 됨. 그리고 보유자 등으로부터 경고나 소장의 송달을 받지 못했더라도 약간의 주의로 부정취득이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사후적 중과실이 인정됨.

1.5 부정공개행위(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부정공개행위(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함(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라)목).

1.5.1 부정공개행위란?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써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임. 본 규정은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영업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위 의무에 위반하여 당해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임.

1.5.2 적용 요건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써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부정공개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근거를 계약관계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사실상의 신뢰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부정한 이익을 얻는다 함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함.

그리고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란 영업비밀보유자의 실제 손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입힐 의도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뜻함.

3)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사용행위란 영업비밀을 그 고유의 용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행위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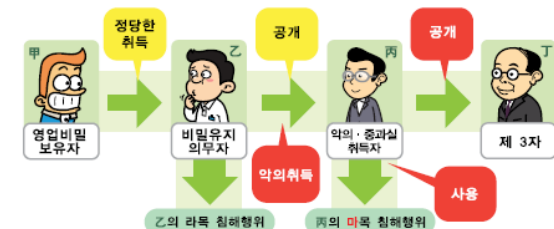
공개행위란 부정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라이선스 계약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여기서 '공개'의 개념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반적으로 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을 유지하면서 소수의 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입장도 있음.

1.6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1.6.1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란?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가 됩니다.

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가 됨(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마)목).

본목은 (라)목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또는 인식하지 못하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한다는 이중의 주관적 요건을 가짐. 따라서 (마)목에 의거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자는 부정공개행위 개입 사실을 인식했다는, 또는 인식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는 사실과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1.6.2 적용 요건

(마)목은 부정공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됨. (마)목은 (라)목의 침해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직접 취득, 사용, 공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시 전달받은 자가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음.

1.7 부정공개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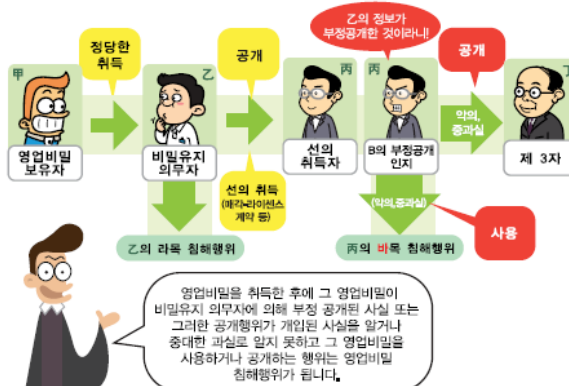
1.7.1 적용 요건

(바)목은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영업비밀인줄 모르고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후에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적용됨.

1.7.2 취지

(바)목의 규정 취지는 비밀유지의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개한 영업비밀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부정공개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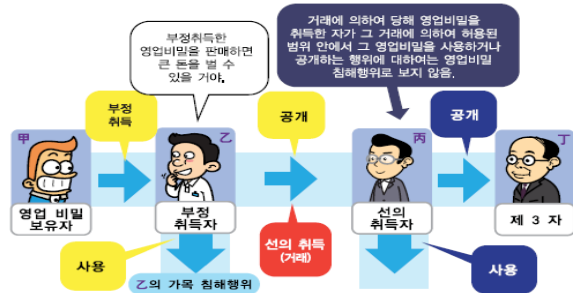


1.8 선의자 특례

1.8.1 취지 및 효력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

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지 않음. 즉, 영업비밀 보호법은 특례 조항을 두어 제2조 제3호 (다)목, (바)목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임.



이에 따라 영업비밀 취득 시에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사실 또는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증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거래에 의하여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거래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없음.

1.8.2 적용 요건

1) '거래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의 경우에만 적용

본조의 규정은 '거래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됨. 여기서 '거래'는 매매는 물론이고 양도계약, 라이선스 계약, 중여계약, 대물변재 등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법률상의 전형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비전형적인 사실상의 거래를 포함함.

거래에 의한 취득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이나 합병에 의한 취득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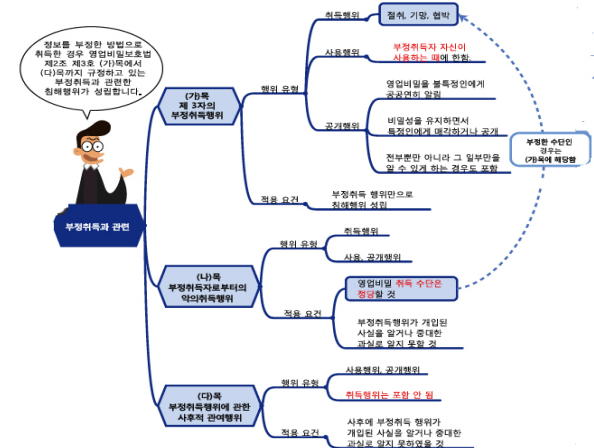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 함은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이나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지 못한자를 말함. 하지만 증대한 과실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증과실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3) 보호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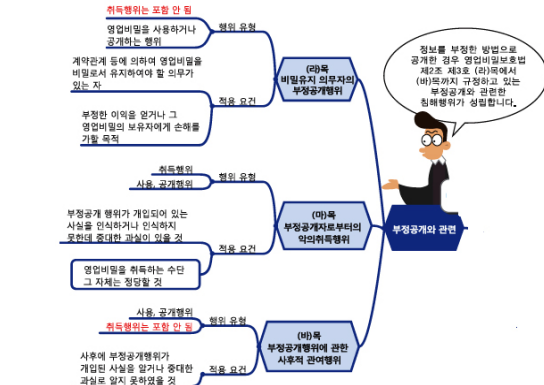
따라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이익을 꾀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여전히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어 침해금지 청구의 대상이 됨.

1.9 요약

1)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2.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2.1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방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방법은 네 가지가 있음.

- 1) 금지 및 예방 청구권
- 2) 폐기, 제거 등 청구권
- 3) 손해배상 청구권
- 4) 신용회복 청구권

2.2 금지 및 예방청구권

2.2.1 취지



금지 및 예방청구권은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임.

2.2.2 청구하기 위한 요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음.

2.2.3 청구권자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청구권자는 영업비밀의 보유자임.

2.2.4 청구권의 내용

1) 금지 청구

- 특정한 제품의 생산을 일정기간 중지
- 완성제품의 배포, 판매 금지

2) 예방 청구

예방청구는 현실적으로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에 인정됨.

2.3 전직금지(경업금지) 청구

2.3.1 전직금지의 필요성

영업비밀 침해의 대다수 사건들은 퇴직 근로자들이 전 고용자의 정보를 임의로 새 직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처럼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였지만 퇴직 근로자들이 영업비밀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업은 더 이상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 전직금지 약정이 필요함.

2.3.2 판례상 전직금지청구의 허용기준

1) 당사자 간의 전직 또는 전직금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내용과 금지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어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한 경우는 퇴직 후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 청구 인정.

2) 당사자 간의 전직금지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4 폐기, 제거 등 청구권

2.4.1 취지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의 수중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를 그대로 둔다면 또다시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의 침해행위를 금하는 것만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음. 이에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금지 및 예방청구와 더불어 폐기, 제거 청구를 인정하고 있음.

2.4.2 청구 대상

- 1) 폐기 및 제거청구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사양서, 실험데이터, 고객 명단.
 -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
- 2)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
 - 부정취득행위에 제공된 도청기.
 - 부정사용행위에 제공된 제조기계, 종업원 교육 매뉴얼.

2.5 손해배상 청구권

2.5.1 청구 상대방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

2.5.2 청구 요건

- 1) 고의, 과실에 의해 영업비밀침해행위가 발생하여야 함.
- 2)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함.

2.5.3 배상 범위

- 1) 적극적 손해: 기존 재산의 감소
 -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조사하거나 포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침해의 제거나 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변호사 비용
- 2) 소극적 손해: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

영업비밀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판매수량의 감소에 의하여 상실된 경우.
- 3)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

2.6 신용회복 청구권

2.6.1 취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조치로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영업상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거나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2.6.2 청구 요건

- 침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을 것
- 영업상 신용의 실추
- 손해배상 이외의 별도의 신용회복조치가 필요

2.6.3 판단의 기준 시점

신용회복 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함.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3.1 형사적 대응의 전개

3.1.1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대응

침해 대상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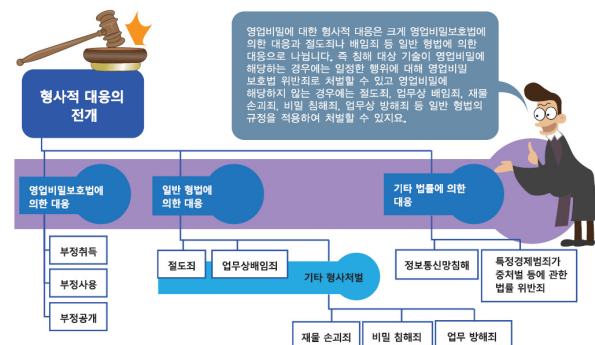
3.1.2 일반 형법에 의한 대응

영업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저장매체 등을 절취행위는 절도죄로,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배신행위는 배임죄로 처벌 가능함.

3.2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대응

3.2.1 형사처벌 규정 도입 과정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모든 국가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의 입법 초기부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은 모든 영업비밀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술 보호 필요성 유무에 따라 일정 형태의 영업비밀에 대하여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3.2.2 영업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변화

1) 보호 대상 확대

종전에는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을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였으나 경영상의 영업비밀을 추가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하였음.

2) 처벌 대상 확대

처벌대상을 '현직 임직원'에서 전현직 임직원으로 확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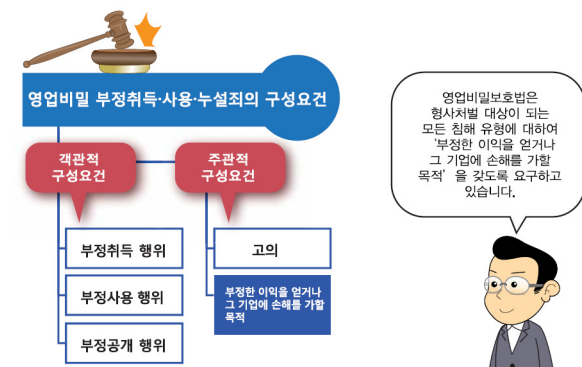
3) 처벌 형량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현재는 침해행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하였음.

4) 예비, 음모 처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기존에는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2004년 개정법을 통하여 이러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음.

3.3 영업비밀 부정취득, 사용, 누설죄의 구성요건



3.3.1 객관적 구성요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3.3.2 주관적 구성요건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자는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취득, 사용, 누설하는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필요함.

3.4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죄와 범죄실현 단계



3.4.1 예비, 음모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훔치기 위해서 경쟁사 사무실 내의 영업비밀 보관 장소를 탐색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하였지만, 이후 침해행위가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 또는 음모로 처벌함.

3.4.2 미수

침해가 완료되지 않고 실행착수 단계에 머물렀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함. 미수범의 형은 침해가 완료된 경우보다 경감할 수 있음.

3.4.3 기수

침해가 완료된 경우 기수에 이르러 기수범으로 처벌함. 영업비밀을 불법하게 취득한 행위의 경우 보유자를 배제한 시점에 기수가 되며, 부정공개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시점에 기수가 됨.

3.5 일반 형법에 의한 대응

3.5.1 배임죄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임.

특히 재산권을 보호법적으로 하고 침해 행위가 본인과의 신임관계 또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사기죄와 비슷함. 다만 사기죄는 신임관계의 침해, 즉, 기망행위를 벌하는 것인데 반하여, 배임죄는 기존의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벌하는 것임.

3.5.2 영업비밀의 침해와 배임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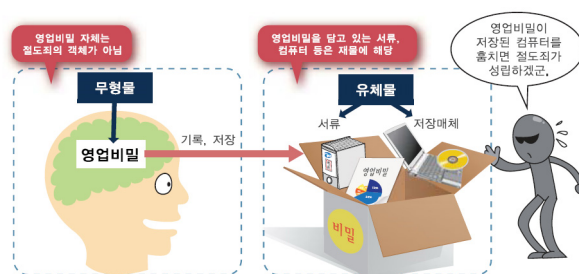
배임행위는 본인과의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배임행위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이 자료를 회사 몰래 유출한다면 이는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떠나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따라서 유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데 실패한 경우나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출 자료가 영업상 중요한 자산임을 주장하여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음.

3.5.3 절도죄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훔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임. 소유권을 보호법적으로 하는 죄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임.

배임죄가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것에 반하여 절도죄는 재물을 객체로 함.



4. 결론

본고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침해행위유형, 이에 따른 민사적 구제,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는 특허 침해와 동떨어지게 다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는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방법은 무엇인지, 영업비밀이 만약 유출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며 이에 따른 대응절차 및 분쟁 발생 시 구제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할 예정입니다.